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QnA

Q-1

(장학금)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가요?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-1

- 장학금은 플랫폼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수혜제한 등 주요 원칙은 현재 검토 중이며,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(안)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.

Q-2

(장학금) 프로그램 참여학생들에게 참여도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로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지?

A-2

- 장학금은 해당 금액은 인센티브 등 인건비가 아니라, 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의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.
- 수혜제한 등 주요 원칙은 현재 검토 중이며,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(안)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.

Q-3

(현장실습) 현장실습 수료생(졸업생, 졸업유보생, 4학년 재학생, 대학원생)에 대하여 기업의 인턴기간동안 생활임금 수준의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?

A-3

- 해당 금액은 인건비가 아니라, 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의 현장실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, 사업계획에 반영 시 지출 가능합니다.

Q-4

(지원비) 중심대학에서 수학시 참여대학의 학생들에게 수학보조금 형태(숙박비 또는 기숙사 비용, 교통비, 식비 등)의 지원이 가능한지?

A-4

- 해당 금액은 교육체계 개편비/소과제 구성·운영비의 공동교육과정 참여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며, 사업계획에 반영 시 지출 가능합니다.

Q-5

(인건비)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부생, 대학원생, 신규 강사, 조교 등의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가요?

A-5

-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과 보조하는 인력의 보수는 지급(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)이 가능합니다.

Q-6

(인건비) 사업 참여 혁신기관(PBS 적용기관) 내부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?

A-6

- 해당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며, 자세한 사항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(안)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.

Q-7

(인건비) 소과제 주관기관에서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계상이 가능한가요?

A-7

- 본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직원이라면 계상이 가능합니다.

Q-8	(운영인력)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채용인력 이외의 대학별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조교 및 운영인력(연구, 행정) 추가채용 가능 여부?
A-8	○ 사업계획서에 반영 시 가능합니다.
Q-9	(겸직수당) 핵심분야별 사업팀장(참여대학 교수 겸직)에 대한 수당 또는 업무추진비 지급 상한선은?
A-9	○ 인건비는 신규채용 전담인력 인건비, 보조인력 보수, 파견인력 수당, 성과급으로만 지급 가능합니다. 업무추진비는 기타사업운영비에서 편성하시면 되며, 지급 상한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.
Q-10	(파견수당) 도, 대학 파견기관과 총괄운영센터에서 파견자에 대해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?
A-10	○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(안)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.
Q-11	(참여율) 인건비 지급시 참여율 계상방식은 무엇이며, 3책 5공에 해당 되는지요?
A-11	○ 3책 5공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인건비 지급 관련사항은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(안)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.
Q-12	(공간사용료) 교육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에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할 경우 시설 공간 사용료 산정 가능 여부?
A-12	○ 환경 구축 및 개선비(시설비)에서 사무실 임대료 계상 가능합니다.
Q-13	(간접비) 시설/장비 감가상각, 유지보수비용 등을 위한 간접비 계상이 가능한가요?
A-13	○ 해당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며,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개정(안)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.
Q-14	(사업비 집행) 협약일 및 사업개시일 일정, 또한 사업비 사용 개시일자가 언제부터인지?
A-14	○ 협약일 및 사업개시일은 재단-플랫폼 간 협약서 기준(2020년 8월 1일, 대학 지원2팀-11371(2020.07.24.) 공문 참조)이며, 사업비 사용 개시일자는 협약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.

Q-15	(사업비 집행) 참여대학별 사업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 범위는?
A-15	○ 서로 다른 사업비 계정(총괄계정↔별도계정, 또는 별도계정↔별도계정) 간 예산 변경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사전 심의·의결 후 가능하며, 하나의 사업비 계정 내 예산 변경(항목 내·항목 간)은 총괄운영센터의 승인 후 가능합니다. 본 사업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’ 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내부 절차에 따른 사업비 비목 변경 내용 등은 추후 한국연구재단에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.
Q-16	(예산관리) 총괄운영센터가 예산을 통합 관리·집행해야 하는지?
A-16	○ 총괄운영센터가 총괄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2020년은 플랫폼이 법 인화되지 않았으므로 총괄대학이 총사업비 관리주체가 됩니다. 본 사업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’ 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-17	(교육체계 개편비) 교육 프로그램 점검, 계약학과 운영 등에 따른 컨설팅 비용, 외국인 교육을 위한 초청비 산정이 가능한가요?
A-17	○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면 가능하나,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는 중복 투자·집행이 불가합니다.
Q-18	(학과신설)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학과신설 등의 경우 교육부로 언제까지 계획(신청)안을 제출해야 하는지요? (통상적으로 11월까지 제출, 차년도 승인 및 개설)
A-18	○ 교육부 소관 부서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안내할 예정입니다.
Q-19	(과제참여)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교육부소관 타과제(예, LINC+ 등)와 중복 참여 가능한지? 참여 학생의 식비, 교통비 편성이 가능한지?
A-19	○ 내부 기준 및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. 단, 한 학생이 여러 프로그램에 중복참여는 가능하지만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는 지급 불가합니다.
Q-20	(소과제구성) 소과제 수행시 대학, 혁신기관, 대학의 단독 과제가 가능한지?
A-20	○ 대학이 아닌 혁신기관은 단독 과제가 불가능합니다. 본 사업 기본계획 15~1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-21	(소과제구성) 소과제 수행시 혁신기관 - 기업 과제가 가능한지?
A-21	○ 혁신기관이 대학교육혁신에 참여하는 대학이 아닐 경우 불가합니다. 대학교육 혁신에 참여하는 대학이 하나 이상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, 본 사업 기본계획 15~1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Q-22	(소과제구성) 소과제 주관기관으로 기업으로 선정하여 소과제 수행 가능한지?
A-22	○ 기업을 포함한 대학 외 기관이 소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나, 협업 기관에 대학교육혁신 참여 대학이 하나 이상 필수 참여 해야합니다.(기업의 단독과제 수행은 불가함)
Q-23	(소과제추진) 대학 간 정보공유 및 핵심분야 관련 기업·학생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각 대학의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프로파일링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?
A-23	○ 사업계획에 반영 시 사업비 지출 가능합니다.
Q-24	(인프라) 기자재 도입 시 심의 절차 및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
A-24	○ 심의절차는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’ 11p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, 관부가세 관련사항은 관련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Q-25	(소유권) 사업비를 통해 발생하는 논문/특허/시제품 등에 대한 소유 주체는?
A-25	○ 과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,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합니다. 본 사업 ‘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’ 1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Q-26	(소유권) 연구장비의 경우 중심대학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법인화 이후에도 법인소유가 아닌 중심대학에서 소유 관리해야 하는지?
A-26	○ 소유권은 사업비 관리주체(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)에 있습니다.
Q-27	(논문사사) 논문 발표 시 사사문구(국문 및 영문)가 있는지?
A-27	○ 국문 : 본 과제(결과물)는 000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. ○ 영문사업명은 확정되는데로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Q-28	(사업로고) 3개 지역(충북, 경남, 광주·전남) 총괄운영센터의 공통 로고 제작에 대한 의견은?
A-28	○ 공통 로고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.